

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‘의전원’)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선발기준과 장학금지급은 본 의학전문대학원 학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이 세칙에 의한다.

제3조(업무의 주관) 본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업무 중 예산안의 수립, 장학생의 선정, 장학기금의 관리운영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원장이 관장한다.(개정 2014.12.24.)

제 2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

제4조(교내장학금)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생장학금

가. 가천 장학금

- 1) 대상 : 수석 및 차석 입학자
- 2) 내용 :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

나.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

- 1) 대상 : 가천 장학생을 제외한 입학전형 성적우수자 (상위 60%)
- 2) 내용 : 입학금 및 등록금 반액 면제(개정 2014.12.24.)

2. 재학생장학금

가. 성적우수 장학금

- 1) 대상 : 학업성적이 각 학년 5위 이내인 자
- 2) 내용 : 수석과 차석인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, 수석과 차석을 제외한 자에게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.

나. 모범 장학금

- 1) 대상 : ①교내·외 생활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②학업성적이 각 학년 평점평균 2.7이상 또는 성적이 60%이내인 자
③위 ①, ②에 모두 해당하는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(개정 2014.12.24.)
- 2) 선정방법 : 위 대상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신청서를 제출한자

2-3-12~2 제2편 학 칙

중 장학위원회에서 선별하여 결정(개정 2014.12.24.)

3)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.(신설 2014.12.24.)

다. 재직자녀장학금

- 1) 대상 : 본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로 입학 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7이상인 자
- 2) 내용 : 당해 교직원이 사망, 정년퇴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아 오던 직계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.

라. 간부장학금

- 1) 대상 : 원우회의 활동을 한 간부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3이상인 자
- 2) 내용 : 3인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기 등록금의 삼분지일(1/3) 을 지급할 수 있다.

마. 근로 장학금

- 1) 대상 :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3이상인 자
- 2) 내용 : 교내 행정부서에 근로봉사를 제공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,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 중 4인 이내로 하고, 신청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가계의 재정 증명 서류를 포함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.

바. 복지장학금 (신설 2013.10.30.)

- 1) 대상 :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3이상인 자
- 2) 내용: ①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3조 ②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일컬으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으로는 생계곤란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4가지(기초생활, 차상위, 차차상위, 기타)계층을 말한다.
②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사. 기타 장학금

- 1) 대상 : 각호에 세칙으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2) 내용 : 학술·사회봉사·문화·예술 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한

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재가를 거친 후 추천대상자로 선정한다.

제5조(교외장학생의 배정, 추천) 교외장학생의 배정, 추천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.

배 정	장학금 출연자로부터 학년,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대로 배정하고,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정책에 의거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추 천	① 장학금기탁자로부터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장학금기탁자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위원회를 에서 추천을 받는다.
지급방법	외부장학금은 총무처에 입금조치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.

제6조(장학금지급의 제한)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해당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2. 휴학한 경우와 복교 또는 재입학한 자로서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제7조(장학금의 반환) 장학금을 받은 후 해당학기에 자퇴한 자, 타교로 전학한 자는 해당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중수혜) ①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두 종류 이상의 수혜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.

②이중수혜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가부를 결정한다.

제9조(수혜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기 간으로 한다.

제10조(교외장학금) 교외장학금은 출연자 및 각 장학재단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.

제 3 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

제11조(장학금지급의 신청)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와

2-3-12~4 제2편 학 칙

관계서류를 학생부원장에게 제출한다. (개정 2013.10.30.)

제12조(장학생의 확정) 학생부원장은 신청 장학생 대상자를 종합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로 확정한다. (개정 2013.10.30.)

제13조(절차 및 상실) ①장학금신청대상자는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.

②장학금 수혜확정자가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제14조(교내장학금의 지급) ①장학금수혜확정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.

②장학금 수혜확정자에게 해당 장학금액을 등록금에서 면제한다.

제15조(장학금간의 전용) ①성적장학금, 모범장학금, 근로장학금은 수혜인원이 미달 될 경우 에 상호간 전용, 또는 차기 이월 여부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.

제 4 장 장학위원회

제16조(구성) ①본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겸임한다. (개정 2013.10.30.)

③위원은 대학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의 예산책정 및 운영정책에 관한 심의
2.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 기준액 심의
3. 장학금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
4. 기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9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.

제20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간사가 관리한다.

제22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으로 한다.

제23조(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